

# 放火와 火災保險의 損害査定

奇 弘 哲

(保險監督院·電算管理室長)

◀ 目 次 ▶

I. 序 言  
 II. 最近 保險金 不正請求事例들의 몇가지 問題點  
 III. 日本의 保險金 不正請求事例의 特徵  
 IV. 火災保險의 損害査定에 있어서 放火의 調査  
 V. 放火事故에 對한 立證責任  
 VI. 放火事故의 調査에 있어서 損害査定人의 役割  
 VII. 結 語

## I. 序 言

最近 警察廳 資料에 나타난 強力犯 發生 및 檢舉現況을 보면 殺人, 強盜, 強姦, 放火 등 犯罪行爲가 過去 5年間 漸增하는 趨勢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특히 放火의 경우 서울特別市의 경우만 보더라도 1986년에는 90件 發生에 73件이 檢舉되

던 것이 1991년에는 273件 發生에 146件이 檢舉되는 등 무려 3배나 增加되고 있다.<sup>1)</sup>

이는 國民所得이 向上되고 經濟生活이 나아짐에도 複雜한 社會構造속에 한쪽에서는 社會的 病理現象으로 나타나 富의 偏在와 階層間 衡平性의 論理에서 矛盾으로 作用하고 있다.

保險制度에 있어서도 保險의 效用은 私的인 經濟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 企業의 資本效率을 높이어 企業心을 獎勵하는 한편 貯蓄心의 昂揚과 危險의 減少 및 損害의 未然防止에도 效果가 있다고 하지만 保險制度가 갖는 特性에 비추어 볼 때 賭博保險의 誘發과 保險詐欺行爲, 保險目的物에 대한 怠慢으로 인한 保險의 增加 등 그 弊害도 無視할 수 없는 形便이다.<sup>2)</sup>

最近에 와서 保險制度를 不當하게 惡用하고 濫用하려는 保險犯罪行爲가 急激하게 增加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保險犯罪行爲가 增大되고 擴散됨에 따라 不當한 保險金이 잘못 支給되고 이것이 經營收支에 影響을 미치고 大多數 善良한 保險加入者의 財產을 威脅한다면 保險制度가 갖는 經濟的, 社會的 效用性 增大에 懷疑를 갖지 않을 수 없을

1) 서울統計年報, 1992. 12 서울特別市發行, p. 488~489.

2) 具河書, 保險學要論, 法文社, 1981. p. 65~73.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保險犯罪中 放火와 관련한 道德的 危險이 存在하는 事案들을 事例中心으로 檢討해 보고 損害査定側面에서 不當하고 不正한 保險金 請求事例를 막는 査定技法에 대하여 摸索하고 그 對處方法을 講究해 보고자 한다.

## II. 最近 保險金 不正請求事例들의 몇가지 問題點

最近 4~5年間 損害保險業界에서 放火와 관련한 保險金 請求事例들을 損害査定報告書나 法院判決文 등을 根據로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事例 1〉

事故概要：1990. 4. 29 0:20경 경기도 남양주군 所在 ○○화섬공장 내에서 原因未詳의 火災事故가 發生하였으며 同 火災事故로 인해 財産의 被害를 입은 保險契約者가 過多 保險金을 請求한 事實

當事者間的 다툼：保險會社는 火災保險에 適用되는 普通保險約款 第15條 第1項에 의하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損害通知 또는 保險金 請求에 관한 書類에 故意로 事實과 다른 것을 記載하였거나 그 書類 또는 證據를 偽造變造한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損害에 대한 保險金 請求權을 잃게 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위 火災로 因하여 被保險者 甲은 合計金 48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被保險者 乙은 合計金 48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各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保險金 請求를 함에 있어서 損害額을 證憑하는 各種 書類를 虛偽로 作成, 提出하여 過多한 保險金을 請求하고 있으므로 이約

款의 規定에 따라 工場建物以外的 目的物에 관한 保險金 支給債務는 消滅되어 위 火災로 인한 損害中 各工場建物 燒失에 따른 保險金 支給債務로 甲에 대하여 13百萬元, 乙에 대하여 16百萬元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保險金 支給債務는 存在하지 아니하므로 그 不存在 確認을 求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被保險者側은 保險契約에서 정한 甲에게 保險金 297百萬元를, 乙에게는 291百萬元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하면서 위 돈의 支給을 求하고 있음.

法院의 判斷：被保險者 甲은 위 火災로 인하여 섬유공장 건물 金13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위 機械 4臺의 推定價格 金12百萬元 相當의 損害(위 機械 모두 위 火災發生時로부터 10年 以上 前에 製作된 老朽한 것이었고, 그 중 카드기 1臺 및 절단기는 火災發生時 使用할 수 없는 廢品狀態였음)를, 위 工場內部 및 野積場에 保管中이던 再生 畝製造用 原副資材가 燒失됨으로서 金25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입어 위 火災로 인한 損害額은 合計金 51百萬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損害明細書를 提出함에 있어 火災時 섬유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기 2대, 벨브레이크 및 절단기 각 1대 중 카드기 1대 및 절단기 등 위 기계 4대 모두를 1989. 12. 15 製作依賴하여 1990. 4월경 설치한 新品이라고 主張하면서 위 火災로 인하여 合計金 305百萬元의 損害를 입었다는 內容의 明細書를 提出하였고, 被保險者 乙은 위 火災로 인하여 화섬공장이 全燒됨으로써 金16百萬元 相當의 被害를 위 공장 내에 설치된 편칭기, 정면기, 루아마, 절단기, 오물처리타면기 각 1대 및 타면기 2대 등 보온덮개 제조기계 7대의 推定價格 金22百萬元 相當의

損害(위 기계 모두 火災發生日로부터 5年 내지 10年 以上 前에 製作된 老朽한 것이었고 그 중 루야마, 절단기, 오물처리타면기 및 타면기 중 1대는 위 火災發生時 使用할 수도 없는 廢品狀態였으며 위 機械中 타면기 1대와 절단기 1대는 이 事件火災 前날인 1990. 4. 28 저녁에 설치하였다)를, 위 工場內部 및 野積場에 保管中이던 完製品, 原副資材 등이 燒失됨으로써 金11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各各 입어 乙의 위 火災로 인한 損害額은 合計金 50百萬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損害明細書를 提出함에 있어 火災發生時 火災發生日 內에 설치되어 있던 편칭기, 정면기, 루야마, 절단기, 오물처리 타면기 각 1대 및 타면기 2대 등 위 기계 7대 모두를 1990. 1. 16 제작의뢰하여 같은 해 4월경 설치한 新品이라고 主張하면서 合計金 287百萬元의 損害를 입었다는 內容의 損害明細書를 提出하였다.

위 認定事實에 의하면 保險契約者들은 불과 51百萬元 또는 50百萬元 相當의 損害를 입는데 不遇한데도 그 實損害보다 5倍 以上인 金297百萬元 및 291百萬元 以上の 損害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事件 各 保險加入金額에 相當하는 保險金을 請求하고 또 그에 不합하는 虛偽內容의 書類를 提出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事件 實損害額과 保險加入金額 相當額과의 差額을 편취할 의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保險約款規定에 따라 保險金 請求權을 喪失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各火災保險契約에 기한 保險金債務는 甲에 대하여 金13百萬元, 乙에 대하여 金16百

萬원이 存在하고 위 金額을 超過하는 保險金 支給債務는 存在하지 아니함.<sup>3)</sup>

〈事例 2〉

事故概要: 1992. 4. 18 01: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호텔 지하클럽에서 火災가 發生하여 地下內部施設 일체를 燒損, 現場調査過程에서 同 클럽이 營業停止中임에도 불구하고 保險加入金額을 增額한 事實을 確認하여 放火事實을 集中調査.

本件은 放火이니 精確한 調査를 要求하는 提報가 들어왔으며 江南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여 放火部分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임을 建物主측에서 주장하며 保險金을 支給하지 않을 것을 要求함.

放火推定の 根據: 檢察搜查結果 會社가 不渡가 나 資金難이 심각하자 保險을 들어 1回 保險料(470만원)만을 納付하고 保險加入 한달여만에 放火했고,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放火時期를 비오는 날로 택한 점(지하슬집만 保險에 加入), 事件관련자들로부터 放火事實을 自白받고 現場檢證을 한 결과 300坪 규모의 슬집바닥에 깔린 防焰카펫 중 신나가 뿌려진 15m 정도만 새까맣게 탔을 뿐 나머지 부분은 거의 燃燒되지 않았음.<sup>4)</sup>

特記事項: 保險會社들이 경쟁으로 인해 被保險利益 등 保險加入金額을 適正하게 算定하지 않은 채 無差別의으로 保險을 誘致하는 등 募集인이 介

3) 서울고등법원判決 1993. 6. 22. 宣告  
事件 92나43502 債務不存在確認(本訴)  
92나43519 保險金(反訴)

4) D火災海上損害査定(株) Report No. 2221-NS, 1992. 8. 1.

入된 故意放火의 빌미를 提供하고 있었던 點

※ 本件 보험사에서 免責處理 通報하였음.

〈事例 3〉

事故概要: 1992. 10. 19 새벽 충북 음성군 소재  
○○벽지/○○상사 工場建物內에서 發生된 火災  
事故

放火推定の 根據:

○ 無保險狀態에 있었던 動産을 火災發生 7個月  
前에 保險에 加入한 點

- 同工場은 1990年 設立된 以來 한번도 동  
산에 대한 火災保險을 加入한 事實이 없었  
으나 火災發生 7個月前 加入하였으며 더우  
기 保險加入時點에는 1億7千萬원의 去來  
處不渡와 景氣不況으로 資金事情이 惡化된  
것으로 調査되었음.

- 契約者側이 提示한 關係帳簿를 土臺로 한  
同 工場의 原·副資材 總價額은 약 4,900  
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보다 10배나 많은 5  
億원의 保險에 加入한 點

- 動産의 所有者가 1992. 1. 22에 變更되었  
음에도 保險會社에 變更通知를 하지 않고  
있다가 火災發生 6日前 갑자기 變更通知한  
點

- 全般的인 景氣沈滯와 資金事情壓迫으로 巨  
額의 去來處不渡 등 火災發生前 극심한 資  
金難을 겪고 있었음.

- 리스 및 렌탈기계의 償還 및 使用料가 年  
間 8억원(1991年度 賣出額의 87%)에 達

하고 있어 正常的인 企業經營이 매우 어려  
웠던 點

- 資金難을 겪고 있을 주식회사 ○○벽지가  
1992. 2월 6,700坪의 不動産을 買入한 點

- 동 토지의 買入價는 13억2천만원이었던  
것으로 調査되었는데 동 금액은 국민렌탈  
에서 렌탈한 기계금액 13억2천만원과 一  
致하는 것으로 調査되었음.

- 土地買入資金中 殘金 10억2천만원은 아직  
도 結재하지 못한 상태로서 화재사고 직후  
인 10월 26일 형사인건되어 현재 구속 수  
감중인 상태임.

-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발  
화 당시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

- 사실상 진화작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화재발  
생 약 7시간이 경과한 09:00 경부터 진화  
작업과 무관한 부분적인 건물철거작업을  
실시한 점

- 화재발생일로부터 4일이나 경과한 10월  
23일 계약자측은 보험사의 現場保存要請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現場을 훼손시킨 점

- 국민렌탈 보험금 약 9억원을 편취케 하여  
렌탈자금을 상환하려 했던 점

- 火災直前 在庫 파악을 실시한 점<sup>5)</sup>

保險會社 意見: 위 損害査定會社의 中間報告書  
를 土臺로 同 事故는 우연히 發生한 保險事故는  
아닐 것이라는 判斷下에 最終的인 査定報告書를  
接한 후 決定할 것임(現在調査進行中인 事實임).

※ 서울地檢에 詐欺, 放火로 告訴中인 事實임.

5) (株)K損害査定 Report No. IASCO-921014, 1993. 4. 26.

〈事例 4〉

事故概要：1992. 12. 2 19:30경 경기도 고양시 保險契約者所有 工場建物內에서 原因모를 火災가 發生하여 建物, 動産 등의 一部를 燒失시킨 事故임.

同 火災事故는 保險契約者가 事故發生 직전 實際價額보다 두배나 되는 巨額의 火災保險에 加入하였고, 失火라고 단정할만한 어떠한 火因도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에 의해 火災事實이 發見되기도 전에 契約者가 火災事實을 알고 있었던 事實 등을 토대로 失火가 아닌 放火로 추정.

放火推定の 根據：

- 事故 직전 거액의 火災保險에 가입
  - H보험회사에 사고 7시간 전 가입
  - S보험회사에 사고 12일 전 가입
  - 실제가액보다 약 2배나 초과시켜 중복보험으로 가입(2억원→4억원)
- 工場設立 2년이 경과하도록 無保險狀態로 있다가 不況과 赤字로 工場경영이 어려운 時點에서 火災保險에 加入
- 赤字經營으로 工場경영이 어려움에도 保險料가 저렴한 一般火災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하고 保險料가 비싼 長期火災保險에 加入
  - 一般火災保險(保障性) - 2,132,000원(年間)
  - 長期火災保險(貯蓄性) - 11,637,000원(年間)
- 月平均 赤字規模가 약 2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工場경영이 어렵다는 점

- 失火를 立證할만 한 發火源이 없다는 점
- 事故日 17:00경 工場을 퇴근하였다는 保險契約者가 發火 직전 18:20경까지 工場에 있었다는 사실이 調查結果 밝혀짐.
- 소방서 接受時間이 19:34경임에도 契約者는 이보다 앞선 18:20경에 火災事實을 알고 있었다는 點<sup>6)</sup>

保險會社 措置：관할경찰서에서 “火因不明”으로 放火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意見에 따라 檢察에 搜查依頼하였으나 無嫌疑判定으로 決定되어 6千萬원 支給通報하였음. 그러나 契約者는 1億7千萬원을 要求하며 受領拒絶하고 있음.

〈事例 5〉

事故概要：1993. 5. 15 03:00 전주시 소재 地下 노래방에서 失火에 의한 發火源이 없고 發火現場이 2個所이고 신나나 타다 남은 신문지가 증거로 수집되고 계단실 및 복도 등의 1m 이상의 벽지가 소실된 것

放火推定の 根據：

- 2차례에 걸쳐 관할구청으로부터 노래방(불법건축물) 철거 公文을 받은 사실과 無許可 노래방영업에 대한 관할경찰서의 형사고발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건물주가 1993. 5. 9 노래방철거문제를 계약자에게 강하게 要請하였으므로 다음날(5월 10일) 보험에 가입했던 사실
- 보험계약자는 더이상의 不法營業이 不可能하

6) (株)K損害査定 Report No. IASCO-92105-A, 1993. 3. 19.

고 노래방시설을 철거할 경우 투자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保險을 惡用하여 投資額을 회수할 目的으로 거액의 火災保險에 가입 후 (실제가액보다 329%나 초과시켜 보험에 가입 企圖) 事故現場에서 放火의 物證이라 할 수 있는 신나, 신문지 등이 발견되었고 其他 여러가지 現場狀態 및 契約者측의 제반상황을 토대로 할 때 同 火災事故는 故意的으로 發生시킨 放火事故로 判斷됨.

特記事項: 위 노래방 火災事故는 같은 지역에 두개의 노래방이 각각 S보험회사와 A보험회사에 하루간격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과 兄弟가 관련되어 제3의 女人을 保險契約者로 利用한 점 등이 近來에 보기 드문 保險詐欺件으로 생각됨.

※ 本件 A社는 一部支給했고, S社는 債務不存 在訴訟을 提起하여 繫留中에 있음.

#### 〈事例 6〉

事故概要: 1989. 12. 28 10: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전기(주)가 사용중인 4층 자재창고 건물 내에서 용접업체의 용접공이 산소 용접기에 의한 철망간막이 작업중 不注意로 火災가 發生하여 同 倉庫內에 收容中이던 各種 原副資材 등의 動産이 燒失되는 事故가 發生

이후 保險金の 過多補償을 노린 保險契約者가 火災事故를 조작하여 損害를 加重시켰다는 目擊者의 提報에 따라 보험사기사고와 관련한 것

保險詐欺의 경위: ○○전기가 保險詐欺行爲를

하기 위해 損害가 없던 動産을 火災現場으로 옮겨 놓고 물을 뿌린 사실이 목격자 3인에 의해 확인

- 보험사기행위를 自行한 12월 28일 一次現場 調査를 마치고 귀사하는 損害査定(株)직원을 미행한 契約者측 사람이 現金으로 직원을 매수하려 했던 사실
- 직원매수에 실패한 계약자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소송, 언론공개 등의 직접적인 협박을 가한 事實
- 1989. 7. 17 주요부품 A, B, C가 性能檢査에서 各種不良率이 各各 100%, 51.8%, 28.6%로 發見되어 이때까지 在庫狀態에 있던 이들 부품 41,822 PCS가 사용불능상태로 되어 버렸다는 事實
- 3층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층제품창고로 내렸다가 화재가 발생한 날 다시 4층 火災場所로 옮긴 事實
- 1989. 11. 28 모터수불대장에 재고량 16,635 PCS가 이월되지 않은 사실
- 화재손해가 없는 모터 7,429 PCS를 공장으로부터 약 2km나 떨어져 있는 임대 창고에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사실

損害査定會社의 査定意見: 本事故는 火災事故가 發生한 직후 契約者가 고의적으로 保險目的物을 훼손시키는 등의 보험사기행위가 밝혀져 既存 火災事故로 發生한 損害範圍와 契約者가 故意로 發生시킨 範圍의 識別이 不可能하여 保險價額 및 損害額算定은 實施하지 아니하였음.<sup>7)</sup>

本件 結局 保險契約者의 請求拋棄로 一段落되었다.

7) (株)K損害査定 Report No. IASCO-891234, 1990. 5. 28.

### Ⅲ. 日本의 保險金 不正請求事案의 特徵

#### 〈重複契約 등의 發覺〉

和歌山縣의 어느 조그마한 田園建物에서 1982.

1. 30일 밤11시반경 火災가 發生하였다.

同建物 1층과 2층의 一部는 클럽, 2층의 나머지 와 3층은 住居用인데 2, 3층은 全部가 全燒되었다. 同 建物の 所有者 古山松(假名)이 石油스토브를 갖고 運搬하다가 전복되어 火災가 났다고 本人이 說明하였다.

火災發生 9日前(1月 21日) 火災保險契約를 締結한 A損害保險會社가 新聞에서 罹災事實을 알고 바로 契約者에게 連絡하여 2月 2日 損害調査를 위해 現場立會를 하다가 그때 「他社의 保險에 加入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質問하였다. 그랬더니 「없습니다」라고 回答이 왔지만 「銀行融資의 建物이면 火災保險이 必要할텐데?」라고 再質問을 試圖하니, 古山은 「前에 어딘가…」라고 말하여 結局 B社가 있었다고 自白하였다.

그 B社 立會를 다음 3日에 指定했다고 들은 A社 擔當者의 肉感은 이상했다. 契約者의 애매모호한 態度나 罹災通知도 갖다는 것. 現場立會 指定日이 B社와 엇갈리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수상하다」라고 생각되어 빨리 各社에 照會하여 보았다.

이를 알지 못하는 B社は 古山の 指定日인 2月3日에, C社は 2月4日에, D社は 2月5日에, 各各 現場調査를 하였다. A社の 照會에 의해 B, C, D 3社를 합한 4個社에 重複件保로 發見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事實이 判明되었다.

우선 約 1年前 1980年 12月 26日에도 石油스토

브를 끄지 않고 過熱시켜 建物에 火災가 發生하여 B社로부터 922萬円, E社로부터 1,950萬円, 合計 2,872萬円の 火災保險金을 受領하였다.

이 경우에도 事故通知를 1個月씩 사이를 두어 重複契約한 事實을 隱蔽하였고 갑갑같이 兩社로부터 保險金受領에 成功하였다.

이번 重複契約에도 C社와는 事故 10日前 1月 20日에 契約하고 A社와는 그 다음날 21日에, D社와는 26日에, 不過 7日間에 連續하여 契約締結日을 달리하면서 建物は 各社마다 5,000萬円, 家財는 C社 2,000萬円, A社 1,000萬円, D社 1,500萬円으로 既契約된 B社 建物 3,000萬円을 포함한 保險加入金額은 合計 2億2,500萬円에 達한 것으로 밝혀졌다.

古山이 各保險契約締結에 즈음하여 他社契約의 事實을 告知 또는 通知하지 아니한 理由를 들어 保險會社 4個社側의 辯護士名義로 保險契約解除, 支給拒絕의 內容證明郵便을 發送하는 등 4個社가 의연한 자세를 堅持하므로 古山은 大阪地裁에 9,750萬円餘의 保險金請求訴訟을 提起하였다.

그 結果 1986. 2. 26 大阪地裁는 原告古山の 故意에 의한 放火인 것으로 原告敗訴判決을 내렸다. 그 認定根據는 다음과 같다.

- ① 出火狀況에 대하여 檢證時와 本人尋問時의 陳述이 전혀 相反되고 信憑性이 없다.
- ② 出火原因에 대하여 Maker 實驗結果에 의해 도 石油스토브를 轉倒시켜 燃料탱크에 燃燒되었다는 古山の 陳述은 信憑性이 의문시 됨.

####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無効〉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이 체결된 경우 日本 商法 648條는 契約者가 委任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保險者에게 告知할 것을 要하고 保險約款은 他人을 위한 契約의 뜻을 請約書에 記載할 것을 通常 要求하고 있으며 어느 것에도 그 告知나 記載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契約을 無效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保險契約者(賃貸人)가 被保險者(賃借人)의 委任을 받지 아니하고 多額의 保險契約을 한 件에 대하여 商法 648條에 의한 契約을 無效로 認定하여 被保險者로부터 普通火災保險金, 店舖休業保險金, 合計 約 6,200萬圓의 請求를 棄却한 事案이 있었다.(名古屋地判 1987. 7. 16, 控訴審 名古屋高判 1988. 8. 25)

이는 종래 3億圓 정도의 保險金額밖에 안된 契約을 12億圓餘로 增加, 隣接家屋이나 賃借人을 위해서까지 多額의 保險契約을 체결하고 그 直後 火氣가 없는 場所에서 火災가 發生, 同件은 放火가 疑問되는 事案으로 判決은 保險契約者에 의한 詐欺行爲 등의 危險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商法規定을 적용한 것이다.

#### 〈故意免責事故〉

文具店主人이 煙草를 倉庫에 放置하여 火災를 發生케 해 3차례의 火災保險金 受領을 企圖한 事案임.(東京地判 1983. 12. 26)

3年間 每決算期 7월에 火災를 發生시켜 多額의 保險金(前年度 3,750萬圓)을 受取하고 今回에도 約 4,000萬圓을 노렸다.

契約者가 慢性的인 營業不振狀態에 있고 多額의 債務를 負擔하여 經濟的으로 苦痛받고 있는 狀況

에서 出火後의 契約者들의 의심스런 行動으로 보아 上記 第1審 判決은 故意放火로 斷定하여 火災・長期總合保險金請求를 棄却시켰다.

第2審은 第1審 免責事案의 控訴審에서 原判決과 같이 積極的인 故意로는 斷定치 못하고 煙草를 「故意로 放置」했기 때문에 出火로 推認하여 「비록 故意가 있더라도, 故意에 比하여 重大한 過失」로 認定하여 請求棄却의 原判決을 維持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多發한 것은 下手人不明의 放火 또는 疑問火이다.

十和田湖 溫泉에 있는 어느 호텔 火災는 5個所에서 同時에 出火로 出火場所附近에서 기름냄새가 나 放火가 의심되지만 火災保險金 請求訴訟에 있어 被告 保險會社의 放火主張에 대하여 法院은 「放火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立證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고 하여 免責을 認定하지 아니하였다(東京地判 1986. 3. 17).

財物保險에 있어서 被保險者의 自招事故 즉 本件 古山主張의 「失火」나 前記한 「3年連續 煙草火災事件」 등은 故意 내지 重過失免責의 立證이 可能하다. 그러나 第3者가 加害者로 되는 財物保險事故에는 被保險者가 直接 介入하지 아니하므로 作爲性的 立證이 극히 困難한 점이 있다.

여기에서 第3者란 火災事故로 利益을 享受하여 얻을 可能性이 있는 保險金債權의 質權者, 債權者, 目的家屋內의 動產所有者, 土地所有者나 買受人, 買收豫定者 등이 있지만 同人의 人格, 職業, 收入, 社會的 地位 其他 放火實行的 蓋然性을 考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8) 保險金不正請求事案의 特徵と對處方法, 藤田良昭, 損保企劃 No. 390, No. 391, 1989. 6. 25, 7.5.

#### IV. 火災保險의 損害査定에 있어서 放火의 調査

Michael F. Dennett는 그의 著書「Fire Investigation」에서 放火(Arson)事故를 發生하게 하는데에는 火災原因 提供者에 따라서 여러 가지 理由와 動機 및 方法이 있겠지만 査定人(Investigator)의 視點에서 다음 여섯가지 形態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즉 첫째로 金錢上의 利得을 目的으로 犯行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放火犯(Arsonist)은 다음 4가지 分明한 手段을 통해 目的을 成就하려고 試圖한다.

- ① 放火犯 자신이 發火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火災事實과 無關하게 ALIBI(現場不在 證明)가 成立되도록 時間活用(Timing Devices)을 철저히 한다.
- ② 火災現場에서 쉽게 發見되어지는 材料를 使用하여 火災의 흔적을 남겨둔다.
- ③ 가능한한 오랫동안 火災의 發見을 지연시키도록 努力한다. 즉 사람들이 빈번히 來往하지 않는 곳이나 外部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을 擇한다.
- ④ 放火는 意圖的인 火災로서 모든 證據를 湮滅하고 偶然的인 火災인 것으로 僞裝한다.

그러므로 査定人은 모든 物的證據를 精確하게 찾아 放火의 動機를 털어놓게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放火의 動機로는 가령 金錢上의 利得을 얻기 위하여 經營이 어렵거나 破産危機에 있을 때 또는 施設物 機械 商品의 老朽化 및 새로운 技術開發의 機會가 없는 경우에 發生한다. 또한 保有 財産의 狀態가 周圍環境에 뒤떨어져 正當한 價格으로 財産을 處分할 수 없는 경우와 動産에 있어

서는 修理할 餘裕가 없거나 特殊 또는 外國 Model이 너무 빨리 減價되거나 期待보다 많은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 등을 例로 들 수 있다.

둘째로 放火의 目的은 犯罪의 隱匿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다. 現行犯이 自己의 個人的 證據를 湮滅하도록 하는 方法으로서 指紋을 지우기 위하여 火災를 일으키고 強制侵入의 흔적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은닉에 대한 火災의 또다른 形態는 被雇傭人이 거짓 記錄·會計帳簿·少額現金證憑 등에 대한 責任問題가 따를 때 發見時 不一致가 두려워 문제가 되는 證憑을 燒却시켜 버린다.

셋째로, 放火는 파괴 및 反抗의 手段으로 利用된다. 人間의 感情을 誘發시키는 몇 가지 理由를 보면 對人關係나 組織內에서의 意見의 不一致와 論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事案에 대하여 警告 또는 拒絕되었을 때 및 雇傭이 經了되었을 때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放火犯의 立場에서 보면 순간적인 분노가 될 것이고 그 狀況이 계속 지속된다면 現場에서 불을 지르는 結果를 낳게 된다.

넷째로 放火는 英雄心의 發露로 表出된다. 어떤 集團이나 環境이 個人的 活動範圍가 制限의일 때 英雄心드름(症候群)으로 나타난다. 흔히 이러한 경우 火災發生은 비교적 小規模이고 다만 英雄으로 發見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일단 英雄이 되면 放火犯은 그 行爲를 反復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 그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거나 그 衝擊이 完化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섯째, 精神的 異狀者가 自己의 必要充足을 위해서도 放火가 利用된다. 一般的으로 어떤 問題 특히 精神的으로나 性的으로 被害를 당한 사람이 火焰을 볼 때 어떤 解放된 기분을 갖는다. 불난 장면을 보는 동안 이상하게 흥분하는 사람의 그

뒷 배경을 보면 이러한 性格의 所有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火災發生場所 가까이에서 빈둥거리거나 鎮火時에 火災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로 放火는 지루함 또는 권태를 달래기 위해서도 利用된다.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反復의인 일이 많아 個人的 欲求를 滿足시키기 위한 精神的, 肉體的 자극제를 찾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工場生産Line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停止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火災를 일으키게 하여 機械的 損傷을 가져오게 한다.<sup>9)</sup>

## V. 放火事故에 對한 立證責任

1988. 4. 9 18:30경 충북 음성군 소재 ○○藥品工場에서 發火原因不明의 火災가 發生하여 위 工場建物 4棟 및 工場內에 있던 機械, 器具, 醫藥品 등 實驗器具 대부분이 燒失된 事故가 發生한 일이 있었다.

保險會社는 調查過程에서 保險契約者의 被雇傭人이 1982年頃 保險詐欺로 處罰받은 前歷이 있었다. 또한 이 事件 火災 전달인 1988. 4. 8 16:00경 事故現場 事務室에서 머무른 事實이 있는 등 重大한 過失 내지는 親族이 故意로 일으킨 것으로 보아 火災保險普通約款 第4條에 의하여 保險金支給義務가 없다고 法院에 債務不存在 訴訟를 提起하였다. 그러나 法院은 이러한 認定事實만을 가지고 保險契約者의 重大한 過失 내지는 親族의 故意로 因한 것이라고 보기에 不足하고 달리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으므로 保險金(252百萬元 相

當)을 支給할 것을 判決하였다.<sup>10)</sup>

火災保險에 있어서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또는 이들의 法定代理人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普通保險約款 第4條 1項)와 「被保險者와 같은 世帶에 속하는 親族의 故意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同約款 第4條 2項), 그리고 被保險者以外的 保險金 受取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의 故意 혹은 重過失에 의한 損害를 免責하도록 되어 있는데 故意란 放火이므로 刑事上의 問題가 되어 警察의 搜查, 臨檢 등에 의한 判斷을 기다려서 立證을 하여야 하나 保險者는 이와는 別途로 放火의 立證을 行하는 것도 可能하다.

被保險者(產業組合)의 法定代理人인 理事가 自己의 犯罪의 證據를 湮滅하기 위한 保險의 目的인 建物에 放火한 事件에 대하여 日本大審院은 理事의 放火가 組合의 目的遂行을 위한 業務執行行爲와는 別個로 認定되므로 法定代理人에 의한 放火에 해당이 안된다는 理由로서 保險會社에 損害補償의 責任이 있다고 하는 下級審의 判決을 支持하였다(大審院判決 1932. 9. 14 民集 11卷1814面).

이에 대하여는 이 約款 및 商法 641條의 精神에 비추어 判決에 反對하는 意見도 있으나 現在의 保險約款에 있어서는 法令違反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를 免責으로 하는 規定이 있기 때문에 이 點을 保險者가 立證하므로써 前記와 같은 法人의 執行機關의 私的行爲에 의한 放火도 免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法令違反에 의한 損害를 모두 免責하게 하는 것의 可否에 대하여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同條 1項 2號에 의하여 親族의 故意는 免責

9) Michael F. Dennett, Fire Investigation, Pergamon Press, 1980, p. 15~25.

10) 서울民地法院判決 1990. 10. 24. 事件 88가합47272 保險金

이 되지만 事實上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與否는 가끔 困難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받도록 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던가에 대한 點과 아울러 立法上에 重大한 問題를 提起하게 되는 것이다.

放火罪는 故意로 積極인 手段에 의하여 行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消極인 手段에 의한 放火의 경우 즉 火災發生을 豫測할 수 있는 狀態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消火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않은 경우에 不作爲에 의한 放火를 단정한 判例가 있다(大審院 判例 1938. 3. 11 刑集 17卷 237面).

保險事故에 있어서 被保險者는 損害가 擔保하는 損因(The Cause of Loss)에 의하여 일어났는가를 立證하여야 한다.

「火災」는 擔保損因中の 하나로 立證은 容易하다. 그러나 放火는 保險事故에 대한 反對抗辯이 있기 때문에 放火의 最終的 立證의 責任은 保險者에게 있다.

刑法으로서 放火의 立證보다 民事訴訟法下에서의 放火立證은 相對的으로 弱하다. 前者는 犯罪의 證明으로 “相當한 義務의 限界를 벗어난 것”이어야 함에 대하여 後者는 證據의 相對的 優位에 있으면 足하다. 保險에서 要求하는 放火의 立證은 被保險者가 放火를 저질렀다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保險者가 더 優勢하게 立證되었을 때 可能하다. 그러므로 被保險者로부터 放火抗辯의 證明을 막아내기 위하여는 證據의 慎重한 수집과 保存에 있다.<sup>11)</sup>

## VI. 放火事故의 調査에 있어서 損害 査定人의 役割

保險詐欺(Fraud)는 단순히 保險金을 타내게 하거나 過渡하게 保險金을 받아내기 위하여 저지른 不正直(Dishonesty)을 말한다. 그러나 放火(Arson)는 保險契約者가 自己의 自動車가 不良品이고 집은 財政的 負擔으로 쉽게 팔아질 수 없는 경우에 故意의으로 自己 또는 第3者의 行爲에 의하여 自己의 車나 집에 불을 질러 保險金을 받도록 하는 行爲로서 이는 純粹한 保險詐欺(Downright fraud)에 해당한다.<sup>12)</sup>

損害査定人의 任務는 이러한 不正直한 保險金支給을 억제하고 統制하는데 있다. 그러한 任務遂行을 위하여는 의심스러운 保險事故件을 調査하게 되고 保險約款의 熟知와 損害調査方法 및 保險詐欺에 適用할 法律 등을 깊이 있게 研究하여야 한다.

放火의 告發은 지극히 慎重하게 處理되어야 하고 결코 가볍게 處理되어서는 안된다. 調査中인 狀況下에서는 放火라고 斷定해서는 안된다. 放火가 의심되면 損害의 原因에 대한 철저하고 誠實한 調査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保險契約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즉 損害査定人은 保險者를 통하여 保險契約者가 履行해 줄 것으로 期待되는 모든 義務를 分明하게 알도록 한다. 放火의 立證을 成功的으로 끌어내기 위하여는 損害査定人은 다음 3가지 要件을 設定하여야 한다.

첫째, 放火의 發火源(Incendiary Origin)을 찾아내는 것이다. 物的 證據로서 意圖의 火災로 볼 수

11) James J. Markham, Property Loss Adjusting, Volume 1, 1990, p. 191~192.

12) Robert J. Pahl, Introduction to claims, 1988, p. 123

있는 것은 多數의 場所에서 火災가 多發한 경우나 높은 可燃性 化學物質이 現場에 있었는지 그리고 타기 쉬운 신문지나 냅마 등이 비정상적인 狀態로 흩어져 있을 때 이러한 事實들의 모든 것이 放火라고 보이면 일단에는 成功한 것이다.

둘째로 發火源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放火의 抗辯으로 證明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放火의 動機를 發見하여야 한다. 放火의 一般의 動機는 保險에 있어서는 金錢의 利得에 있다. 金錢의 利得을 얻기 위하여 保險者는 現在 建物보다 保險金을 받아 被保險者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點을 立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專門 會計士의 도움이 要求되고 被保險者의 帳簿를 철저히 調査하여야 한다. 金錢의 動機는 언제나 쉽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대개의 경우 損害査定人들은 業務用으로 通常 使用하는 建物이 物理적으로 堅固한 것으로서 所有主에 의해서 저질러진 放火로는 결코 파괴되지 아니할 것으로 순수하게 믿고 있다. 所有主의 財政的 立場에서 現在의 建物を 가지고 있을 것인지와 保險金을 받아냈을 때와를 比較해 본다. 이러한 決定은 企業의 收益성과 財産에 대한 效率的인 使用의 實驗結果를 통하여 알게 된다.

셋째로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契約者를 대신하는 代理店이 火災가 發生하도록 機會를 마련하는 것이다. 火災發生時 被保險者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追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火災가 나기 바로 前에 現場附近에서 배회하고 있었다는 證明은 放火의 強力한 狀況證據가 된다. 비록 被保險者의 알리바이가 立證된다 하더라도 放火는 時間使用計

劃(Timing Devices)을 보여 줌으로써 確認될 수 있고 被保險者가 代理人을 통하여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다음으로 故意로 의심이 가는 保險金詐取目的의 放火의 경우에는 事故原因 調査에 慎重하게 對處하는 것이 當然하지만 保險會社는 法的 搜查權이 없으므로 實際로는 警察·消防當局과 密接한 連絡으로 搜查의 結果를 注視할 必要가 있다.

損害査定人(Adjuster)은 때로는 불을 지른 放火犯으로부터 生命의 威脅을 느끼거나 誣告罪로 告發당할 危險도 있다. 그래서 搜查依賴에 消極的이 되는 경우도 있고 犯行現場地域의 警察官은 放火犯과 相互癒着하여 無嫌疑로 放免시킬 素地도 생길 수 있다. 앞으로 損害査定人制度의 定着을 위해서 이러한 專門分野에 있어서 保險會社 특히 損害査定人이 直接 司法權을 行事할 수 있는 制度確立이 必要하며 損害査定會社에서도 前職警察官中心의 私立探偵人을 많이 確保하여야 될 줄 안다.

모름지기 査定實務를 取扱하는 保險會社의 査定擔當者에게 要求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不正을 미워하고 강한 社會正義感和 正確한 洞察力을 갖는 實務的 判斷能力이 있어야 한다.

## VII. 結 語

保險制度는 保險加入者의 正直性을 前提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存立하기 어려운 制度이다. 왜냐하면 保險契約은 그 特性上 最大善意(Utmost good faith)의 契約인 반면 射倖契約性이라는 二重의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3) James J. Markham, Property Loss Adjusting, Volume I, 1990, p. 189~190.

보험금을 노리고 殺人·自害를 하거나 船舶沈沒, 放火를 하는 등의 意圖으로 保險事故를 誘發함으로써 保險制度를 惡用하게 되는 結果, 社會的 問題點으로 擡頭하게 되면 保險이 갖는 效用은 크게 減殺될 수밖에 없다.

1988年 한해에 美國에서는 16億弗의 財産損害가 放火에 기인한 火災로 報告되었다. 또한 歐美各 國家의 保險專門人들은 오늘날 保險詐欺로 因하여 支給된 保險금이 平均적으로 보면 收入保險料의 10~30%까지 되는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 이렇게 道德的 危險이 增大됨으로써 損害率이 높아지고 經營收支가 惡化되어 保險事業者가 保險料를 引上하면 保險加入者들은 引上된 保險料에 反應하여 또다시 道德的 危險을 誘發시켜 保險事業의 經營收支를 또다시 惡化시키는 惡循環, 이른바 어릿광대(Bajazzo)效果가 되풀이 될 것이다.<sup>14)</sup>

犯罪心理學的으로 人間은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모두 罪를 犯하려는 性向을 가지고 있다. 人間의 歷史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犯罪가 있었다는 事實은 모든 人間이 犯罪性向을 가지고 있었다는 創世記의 아담과 하와의 記錄에서 좋은 實證이 된다.

一般的으로 保險犯罪者들은 契約査定業務나 危險選擇業務 그리고 損害調査 및 査定業務를 소홀히 하는 保險會社를 찾아서 犯行을 하는 傾向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契約審査業務, 危險選擇業務 그리고 損害査定業務를 까다롭고 철저하게 하면 그들의 犯罪行爲가 發見될 수 있는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火災保險分野에서 道德的 危險이 介入될 所持가

있는 것으로 重點으로 調査할 指標들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다.<sup>15)</sup>

- ① 超過保險과 重複保險의 與否
- ② 被保險者의 財政狀態(事業不振, 金融逼迫, 税金滯納 등)
- ③ 過多在庫與否(死藏商品의 累增)
- ④ 不良한 販賣狀況
- ⑤ 집세가 들어오지 않는 建物
- ⑥ 休業中인 建物
- ⑦ 都市計劃에 의하여 철거될 建物
- ⑧ 赤字企業으로서 競爭力이 不足한 企業
- ⑨ 火氣가 없는 場所에서의 出火
- ⑩ 過去 保險詐欺로 의문시되었던 經驗을 가진 企業主

保險詐欺로서의 放火事故를 豫防하고 對處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方法이 계속 반복적으로 遂行되고 더 研究되어야 할 줄 안다.<sup>16)</sup>

#### ① 保險者의 迅速한 反應

保險事故의 通知를 받으면 保險者가 즉시 對應하여 保險事件에 관계되는 모든 原因을 正確하게 調査記錄하여야 한다.

#### ② 現場調査

査定人이 現場調査를 하면 많은 潛在的 保險犯罪者들은 놀란다. 따라서 現場踏査를 할 경우 대부분의 補償要求가 現場踏査를 하지 아닐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다.

#### ③ 情報의 入手

放火의 動機나 그 方法 등에 대하여는 現場調査만으로는 不可能하므로 여러 가지 症候를 基礎로

14) 趙海均, 保險犯罪의 發生原因과 對處方案에 관한 研究, 保險學會誌 35號, 1990. 3., p. 80.

15) 火災保險의 査定實務, 保險每日新聞社, 1991, p. 106

16) 趙海均, 前掲書, p. 100.

하여 心證으로 評價할 수 밖에 없으며 保險契約者들에 대한 많은 情報가 必要하다. 특히, 常習的 保險犯罪者들에 대한 情報, 保險請約拒否 및 保險金支給狀況에 대한 情報, 他保險會社에 加入與否에 대한 情報, 保險契約者の 性品, 習慣, 精神狀態, 信用度, 金錢關係 등에 대한 情報 등 이러한 諸般 情報를 保險會社들이 相互間에 交換하는 情報交換 制度를 마련함으로써 各 保險會社는 危險選擇過程에 必要한 情報나 損害査定過程에서 必要한 情報를 容易하게 얻을 수 있다.

#### ④ 特殊한 査定

査定人이 保險犯罪에 대한 疑問點을 發見하면 그는 그의 基本的 業務를 거의 履行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業務와 犯罪證據를 提示하고 警察이나 檢察에 告發하여 그 結果를 期待해 본다.

火災事故가 自然火인가 失火인가 放火인가를 調査하는 것은 火災保險의 損害査定에 있어서 첫 段階인 事實關係의 確認(Investigation)에 屬하는 事項이다.<sup>17)</sup>

이러한 事實關係는 損害의 原因, 損害의 狀況, 그 範圍 등 事故와 損害에 관한 事實關係의 調査 確認으로서 損害査定의 第1의 條件인 동시에 免負責決定의 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査定擔當者가 火災의 發火源을 찾아내고 放火의 動機와 機會를 現場證據로 立證했을 때 그 査定技術에 더욱 信賴性을 갖게 될 것이다.

17) 損害査定의 段階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損害의 調査(Investigation), 損害額 및 保險價額의 評價(Evaluation), 保險金の 支給決定(Negotiation/Termination) 등이다.